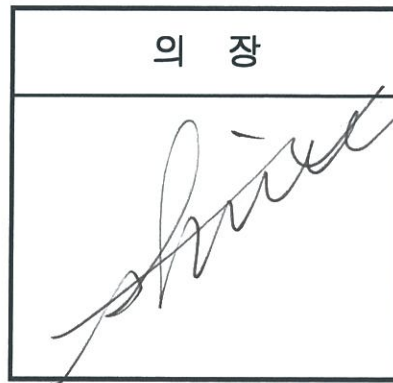


서울을 바라봅니다
시민을 생각합니다

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

2020. 1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No. 10



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의안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발의·제출일
1 (1228)	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	김용석 의원 외 11명 (행정자치)	2019. 12.17.
2 (1229)	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동안 훈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민원배심제에 대한 심의대상, 배심원 구성, 운영절차 및 기준, 결정효력 등 기본 운영절차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 -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직무인 고충민원 조사·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민원배심제의 기능 정립 - 민원배심제의 신청, 배심원후보단과 배심원단의 구성, 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절차 규정 - 민원배심의 공개, 민원배심결정의 효력,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규정	김상진 의원 (찬성 11명) (행정자치)	2019. 12.17.
3 (1230)	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미부과하도록 하여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및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 - 정수처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금 완납이 어려운 수용가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함 -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purple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2020. 01. 13</div> <div style="color: purple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 margin-left: 10px;">의상</div> 최정순 의원 외 23명 (환경수자원)	2019. 12.18.

4 (1231)	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사에 따른 수도요금은 이사 당일까지의 수도계량기 지침으로 정산을 해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현재 요금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“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”하도록 되어 있는 “사전신고 조항”을 폐지하고자 함 -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될 경우 “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”한 경우에만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을 “이사 당일” 즉시 요금을 분리 고지할 수 있도록 함	이광성 의원 외 12명 (환경수자원)	2019. 12.18.
5 (1232)	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요금 관련 민원의 마지막 구제책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고, 과태료 부과 조문과 처분기준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-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심의규정을 명확하게 함 - 과태료 규정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	송정빈 의원 외 10명 (환경수자원)	2019. 12.18.
6 (1239)	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진재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, 지진방재사업 추진,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-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- 지진방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-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	김기대 의원 외 11명 (도시안전건설)	2020. 1.2.

향후계획

2020.01.13
의안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조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1부. 끝.